| 금융위원회 | 보 도 설 명 | | | |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금융감독원 | 보도 | 배포 후 즉시 | 배포 | 2021.4.7.(수) |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|

| 책 임 자 |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장 홍 성 기(02-2100-2630) | 담 당 자 | 김 영 근 사무관 (02-2100-2642) |
|---|---|---|---|
| |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 김 범 준(02-3145-5700) | | 정 재 승 팀장 (02-3145-5697) |

제 목 : 요약설명서만 읽어도 금소법상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'면책 가이드라인'은 검토된 바 없습니다.
(국민일보 4.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
1. 기사내용

□ 국민일보는 4.7일자 「**요약 설명서만 읽어도 '금소법' 설명의무 충족**」 제하의 기사에서,

○ "금융 당국은 금융사 직원이 고객에게 **요약설명서만 읽어도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를 이행**한 것으로 보기로 하고 **'면책 가이드라인'을 제시**하기로 했다."고 보도했습니다.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

□ 현재 금융당국은 금융업권 협회와 함께 **금소법상 설명의무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가이드라인**을 검토 중이오니,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http://www.fsc.go.kr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

"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"